

대구한의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대구한의대학교 생활관규정에 의하여 생활관의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대구한의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제2장 관생자치회

제3조(설치) 생활관내에 관내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 자치회에 관한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관생자치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치회 임원은 자치회장, 부회장, 집행부의 부장, 각 동장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 시기는 11월 셋째 주로 한다.(단, 동장은 기획부장, 문화부장, 복지부장, 전산부장직을 겸한다.)
2. 자치회 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당해 2학년 이상 재학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에 한하고 재임할 수 없다.
3. 사고로 인하여 자치회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4. 자치회는 관내질서 유지 및 환경정화와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3장 관내 생활

제5조(관실 배정)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 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유의 및 금지사항) 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숙
2. 관실 내의 깨끗한 청소
3. 단정한 몸가짐
4. 시간 엄수 및 질서유지
5. 전열기, TV, 전축, 취사도구 등 사용금지(단, 자취형원룸은 취사도구 사용가능)
6.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금지
7. 관내 취사 행위 금지(단, 자취형원룸은 취사가능)
8. 도박, 음주, 관내 흡연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
9.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금지
10.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유인물의 배포 금지

11. 외부인 숙식 제공 행위 금지
12.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개봉 금지
13.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14.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금지

제7조(일과표)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침식사 07:30~08:50(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08:00~08:50)
2. 점심식사 12:00~13:50
3. 저녁식사 17:00~18:50
4. 생활점검시간 01:00
5. 폐문시간 01:00~06:00
6.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일과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비, 식비

제8조(관리비) 관리비의 징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리비는 매학기 납부한다.
2. 입사 또는 퇴사 시 관리비 징수 및 환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학기 중 관리비

입사 시	퇴사 시
생활관 개관일부터 수업일수 · 1/4미만 · 1/4이후 ~ 2/4미만 · 2/4이후 ~ 3/4미만 · 3/4이후 ~ 학기종료	전액 징수 전액의 3/4징수 전액의 2/4징수 전액의 1/4징수

2) 방학중 관리비

입사 시	퇴사 시
본교 학생(관생 포함)이 신청한 일수에 해당되는 관리비 징수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 환불

3. 환불액은 퇴사 후 즉시 환불(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4. 관실(게스트룸 포함)이 공실일 경우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관실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비 금액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식비) 식비의 징수 및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식비는 매학기 납부한다.
2. 관생은 소정의 식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입사 또는 퇴사 시 징수 및 환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입 사 시		퇴 사 시
기 간	정 수 액	급식 시작일부터
월 1~10일	전액	·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함.
월 11~20일	전액 20일분	· 급식 시작일 이후에는 급식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일분의 금액을 공제(위약금)
월 21~30일	전액 10일분	한 후 환불한다.

* 위 표는 입사 및 퇴사하는 월의 기준임

3. 결식비는 생활관 전체 휴관, 학교 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대외 공식 행사 참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학과 공문 제출 시 인정)

제5장 외박

제10조(외박) 관생의 외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관생의 외박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월 20일을 허용하며, 이 경우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10일 까지만 허용한다.
- 무단외박을 한 관생은 귀사 즉시 사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우편물

제11조(우편물) 관생의 관내 우편물(등기, 소포 및 특수우편물)은 행정팀 및 경비실에서 수령하며, 수취인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제 7 장 생활점검

제12조(생활점검) 생활점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생활점검은 매주 월~금 및 일요일(토요일 제외)에 실시하고 01:00에 각자의 관실에서 한다.
- 생활점검은 사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 생활점검은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이 실시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생활점검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해충 점검 또는 전염병의 확산 우려 등의 경우에는 관생이 관실에 없어도 관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전체 청소 및 관실 수리 등의 경우에 관생이 관실에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일 경우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제 8 장 관 리

제13조(관리) 관생은 다음 각 호의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을 발견 시 행정실에 보고 또는 시설 보수의뢰 대장을 작성한다
3.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4. 관생은 관내의 소방안전교육을 년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재예방을 준수한다.
5. 관생은 관실의 위생청소 의무와 책임을 진다
6. 관생은 열쇠를 철저히 관리한다.
7. 관생은 퇴사 시 관실을 원상복구(입사 시의 원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실 및 관실 내 비품 등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8. 관생은 퇴사 이후에 관실 또는 생활관 내에 개인 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개인이 남기고 간 물품의 경우 생활관에서 전화통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하게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적정한 방법의 폐기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 9 장 공고 게시 및 보고 절차

제14조(공고 및 게시) 생활관 내 공고물 게시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관생은 관내 공고물은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 사감을 통하여 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절차) 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생은 사감 및 담당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관생은 사감 및 담당 직원에게 상담 및 건의할 수 있다.
3. 도난, 상해 기타 사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행사 및 집회

제16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 모든 행사와 집회는 다음 각 호의 의한다.

1. 관내에서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최소 7일전에 생활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관내 모든 행사 및 집회는 24:00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상점 및 벌점

제17조(상점) 생활관장은 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 관생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기준은 <별표1>의 상점기준표와 같다. 다만, 상점제 유지기간은 당해 연도 1,2학기로 하며 상점 1점당 벌점 1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18조(벌점)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 기준은 <별표2>의 벌점기준표와 같다.

- 경고 처분: 별점이 5점인 경우(1회 범칙행위의 별점이 5점 이상인 경우도 해당)
- 퇴사 처분: 생활관 규정 제16조에 해당되는 행위
- 1, 2학기 중 누적 10점 이상의 별점이 있는 경우는 후년도 재학생 선발 시 선발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학기 중 경고 처분 대상자를 포함하여 별점이 많은 관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별표1> 상점기준표의 활동 또는 별도의 봉사활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별점을 감해 줄 수 있다.

부 칙

- 이 수칙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수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수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수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수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수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수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어학연수생에 관한 적용례) 외국인 어학연수생에 대하여 이 수칙 제3조(설치), 제4조(구성 및 임무), 제9조(식비), 제17조(상점), 제18조(별점)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상점기준표

번호	상점 내용	점수
1	생활관을 빛내 공이 인정되어 생활관장이 추천한 자	3점
2	룸메이트등 멘토링하여 모범적 행위가 인정된 자	
3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하여 공적이 인정된 자	
4	각종 선행 및 봉사가 인정되어 생활관 행정팀에서 추천하는 자	2점
5	관생을 응급 구조하거나 간병에 봉사한 자	
6	외국인유학생의 룸메이트로서 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자	
7	생활관의 각종 행사(캠페인 포함)에 자발적으로 2회 이상 봉사자	
8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9	경비원, 식당종사원, 미화원에게 공손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점
10	독서실, 휴게실 및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의 청소 봉사자	
11	건물内外 환경 미화 솔선수범한 자	
12	위생점호 시 위생상태 양호 호실을 사감이 추천한 자	
13	기타 관생으로 모범적 행위를 하여 사감이 상점을 인정한 자	

※ 관생자치위원회 임원 및 근로학생은 상점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 학기 5회의 범위 내에서 상점을 부여하며, 최대 받을 수 있는 상점은 10점으로 제한한다.

(별점이 있는 관생이 상점을 받을 경우 상점에 해당하는 별점을 차감할 수 있다.)

< 별표 2>

별점기준표

번호	별점 내용	점수
1	절도, 폭행, 풍기문란 등 단체 생활 부적격자	15점 (퇴사)
2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협, 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학생 통솔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주 일삼는 자	
3	관내에서 음주, 도박 행위	
4	외부인 및 본교 학생, 타동 관생을 무단 숙박시킨 자 (이성숙박)	
5	관실 내 취사 행위자(방학 중 잔류기간 제외)	7점
6	외부인 및 본교 학생, 타동 관생을 무단 숙박시킨 자 (동성숙박)	5점
7	생활점검 후 외부 무단 이탈자	
8	관내 기물,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9	관내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0	배정된 관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11	관실, 복도 등 생활관 내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자	
12	행정실 직원 및 사감에게 불공손자	2점
13	비품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행위	
14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불온 유인물을 허가없이 배포하는 자	
15	무단 외박한 자	
16	귀사 자연자	
17	외부인 및 본교 학생, 타동 관생을 급식시킨 행위	1점
18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한 자	
19	타동 관생, 본교학생 및 외부인 허가 없이 출입행위	
20	애완동물을 관실에서 키우는 행위	
21	식당의 각종 식기류를 무단 반출자	
22	생활점검 시 무단 이탈자	1점
23	독서실내 책상 불결, 책 소지품 방치	
24	사감이나 담당직원의 지도 및 지시 사항 불응 행위	
25	관실 청소 불이행 및 급식실, 생활관 주변에 쓰레기 투기 행위	

※ 별점기준표 내에 없는 사유로 행정실에서 별점 사유가 인정될 시 사감을 통하여 별점을 임의 통보할 수 있다.

※ 부가할 별점은 사감과 행정팀이 협의하여 별점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내에서 전열기(전기 버너(휴대용 프로판 가스 버너 포함), 전기콘로,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열풍기, 고데기 등)의 사용은 절대 금지하며, 만약 사용(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방치한 채 외출, 외박 또는 취침 포함) 적발될 시 퇴사 조치 또는 생활관에서 판단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함.